

협약서

지방공사 대구의료원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과 대구대학교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산학협동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을”이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학 협동을 체결,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협력사항)① “갑은 ”을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.

1. “갑”은 “을”의 재학생들에게 우선하여 실습기회를 제공한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이 파견한 학생들의 학습시설 이용에 적극 협조한다.
3. “갑”은 “을”이 배출한 우수 인력을 채용한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.

1.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재활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및 특수교육학과 소속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파견한다.
2. “을”은 “갑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정 학과의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배정한다.
3. “갑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“을”이 배출한 우수 인력을 추천한다.

제 3조(통보사항) 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실습학생들의 실습 성적을 평가, 결과를 “을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②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실습 학생인원 및 인적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생을 파견할 수 없을 때에는 “갑”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“갑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“을”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4조(기타사항) ① “을”이 파견한 실습생은 “갑”의 지시와 통제에 따른다.

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실습생이 원활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③ “갑”은 “을”이 파견한 실습생의 학과를 고려하여 실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이 파견한 실습생은 “갑”이 공공병원임을 인식 품행을 방정히 할 의무를 가진다.

2000. 4. .

갑 :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장 이 동 구 (인)

을 : 대구대학교 교총장 윤 덕 홍 (인)